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988호 2014. 5. 13(화)

포항시보

◀ 고 시 ▶

-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제2014-56호) 2
- 송라 화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4-57호) 14

◀ 공 고 ▶

-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공고(제2014-31호) 15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 2014 - 56호

**포항 연일증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연일증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연일증명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늘어나는 전원주택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민들이 바라는 저밀도의 전원형 친환경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연일읍 증명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 산3번지 일원
- 면 적 : 141,580㎡

4. 사업시행자 : 증명지구 도시개발조합장

5. 시 행 기 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간

6. 시 행 방 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9.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증명지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 산3번지 일원	141,580	-	141,580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0	증명지구	연일읍 증명리 산3번지 일원	141,580	-	141,580	포항시 고시 제2012-51호 (2012. 6. 18)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1,580	-	141,580	100.0	
주거지역	141,580	-	141,58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580	-	141,580	100.0	

1-1-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1-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2-1. 교통시설

1-2-1-1. 도로(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4,066	35,112	5	1,244	11,935	11	2,091	17,047	6	731	6,130
중로	1	315	3,734	-	-	-	-	-	-	1	315	3,734
소로	21	3,751	31,378	5	1,244	11,935	11	2,091	17,047	5	416	2,396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10~15	국지도로	2,120 (113)	중명 844-1	중명 573	일반도로		2010. 05. 17		
기정	중로	3	161	12	국지도로	315	소로1-6	소로2-8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36	중로3-161	소로1-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21	중로3-161	소로1-1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331	중로3-161	소로1-4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43	중로3-161	소로1-3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7	중로3-161	소로2-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00	소로1-1	소로1-1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4	소로1-1	소로2-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6	소로1-1	소로2-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6	소로1-1	소로2-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23	중로3-161	소로1-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40	소로1-1	소로2-8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49	중로3-161	소로1-2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39	중로3-161	소로1-3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62	소로1-3	소로2-11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95	중로3-161	소로1-3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60	소로1-3	소로2-11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19	중로3-161	소로1-3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6	소로2-2	중명 511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10	소로3-1	중명 산4	일반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21	소로1-6	소로2-2	보행자 전용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주) 괄호안은 폭원확장구간 연장임

1-2-1-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999		999		
기 정	1	주차장	연일읍 증명리 산5-1번지	246	-	246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 정	2	주차장	연일읍 증명리 514-1번지	177	-	177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 정	3	주차장	연일읍 증명리 산3번지	166	-	166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 정	4	주차장	연일읍 증명리 산4번지	177	-	177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 정	5	주차장	연일읍 증명리 산4번지	233	-	233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1-2-2. 공간시설

1-2-2-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2,990	-	2,990		
기 정	1	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원	연일읍 증명리 산3번지	1751	-	1751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 정	1	소공원1	소공원	연일읍 증명리 534번지	1,239	-	1,239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1-2-2-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개소			12,176	-	12,176		
기 정	1	녹지	경관녹지	연일읍 증명리 533	4,277	-	4,277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 정	2	녹지	경관녹지	연일읍 증명리 산4	5,768	-	5,768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기 정	3	녹지	경관녹지	연일읍 증명리 산4	1,491	-	1,491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기 정	4	녹지	경관녹지	연일읍 증명리 514번지	640	-	640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1-2-3. 유통 및 공급시설

1-2-3-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 개소			199	-	199		
기정	1	수도 공급 설비	배수 시설	연일읍 증명리 산4임	199	-	199	포항시 고시 제2013-127호 (2013. 10. 24)	

1-2-4. 방재시설

1-2-4-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335	-	1,335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연일읍 증명리 534번지	695	-	695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소공원1 부지 1,239m ² 중 695m ² 를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연일읍 증명리 514번지	640	-	640	포항시 고시 제2013-38호 (2013. 03. 06)	경관녹지4 부지 640m ² 중 전부를 유수지 중복결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개 가구	90,104		90,104	
1	기정 A1	3,044	연일읍 중명리 533 일원	3,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환지계획 승인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단, A1~A22는 300㎡미만 분할금지 B1은 400㎡미만 분할금지
2	기정 A2	3,510	연일읍 중명리 508-1 일원	3,510	
3	기정 A3	4,061	연일읍 중명리 509 일원	4,061	
4	기정 A4	4,641	연일읍 중명리 530 일원	4,641	
5	기정 A5	4,596	연일읍 중명리 산5 일원	4,596	
6	기정 A6	4,741	연일읍 중명리 514-1 일원	4,741	
7	기정 A7	4,827	연일읍 중명리 516 일원	4,827	
8	기정 A8	2,895	연일읍 중명리 522 일원	2,895	
9	기정 A9	3,840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3,840	
10	기정 A10	3,840	연일읍 중명리 산3 일원	3,840	
11	기정 A11	3,926	연일읍 중명리 산3 일원	3,926	
12	기정 A12	2,775	연일읍 중명리 525 일원	2,775	
13	기정 A13	2,095	연일읍 중명리 산6 일원	2,095	
14	기정 A14	4,196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4,196	
15	기정 A15	5,301	연일읍 중명리 524 일원	5,301	
16	기정 A16	3,344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3,344	
17	기정 A17	5,128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5,128	
18	기정 A18	4,552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4,552	
19	기정 A19	5,618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5,618	
20	기정 A20	5,241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5,241	
21	기정 A21	3,403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3,403	
22	기정 A22	1,084	연일읍 중명리 산4 일원	1,084	
23	기정 B1	3,446	연일읍 중명리 536 일원	3,446	

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2-2-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A22	A1~A2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일부부지(500㎡미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 단독주택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60%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200%이하) 			
		층수	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용도의 지하층·반지하층 설치금지 단독주택의 경우 3층 이하로 제한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주차장 용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 이하로 가능 근린생활시설은 4층까지 허용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형 지붕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2. 준주거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서 7호, 9호에서11호, 14호, 20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 위 시설 건축연면적중 50%미만 면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공연장, 관람장, 격리병원, 옥외철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60%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200%이하)
		층수	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주5	주1~ 주5	용도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00% 이하	
		층수	최고	• 3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2-4. 공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어1, 소1	어1, 소1	용도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00% 이하	
		층수	최고	• 3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2-5. 수도공급설비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수1	수1	용도	지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지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00% 이하	
		층수	최고	• 3층 이하
			최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1-1.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표시 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A9~A11, A13, A15~17, B1	• 중로 3-161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권장(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포항시 고시 제2014-57호

송라 화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승인된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29번지 일원의 송라 화진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포 항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가. 명 칭 : 송라 화진 온천공보호구역
-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29번지 일원
- 다. 면 적 : A=9,781m²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유

- 가.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 도모
-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3.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4.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50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4-31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2일

포 항 시 장



○ 공고사항

면허번호		양식어업면허 포항제 30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등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929-41
	성 명	정 승 우
	주민등록번호	590817-1*****
어업면허기간		2007.03.28.~ 2017.03.27.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1.0ha)
처분 년 월 일		2014.05.02.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포항제 197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가두리식)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929-41
	성 명	정 승 우
	주민등록번호	590817-1*****
어업면허 기간		2014.05.02.~ 2024.05.01.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 (1.0ha)
처분 년 월 일		2014.05.02.

어업면허증

성명 : 정승우

생년월일 : 1959년 08월 17일

주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929-41

1. 면허번호 : 포항시 양식어업 면허 제197호

2. 어업의 종류 : 복합양식어업(수하식)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 연승식 5%이상 20%이하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 10,000㎡

6. 포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

7. 포획·채취방법 : 양식채취

8. 어업의 시기 :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 2014년 05월 02일부터 2024년 05월 0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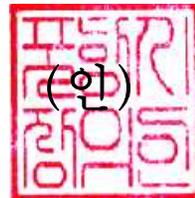
10. 제한 또는 조건 : • 정부에서 발하는 명령 제한 조건에 위반 할 때는 본 면허는 취소합니다.

11. 등록일자 : 2014년 05월 02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14 05. 02.

포항시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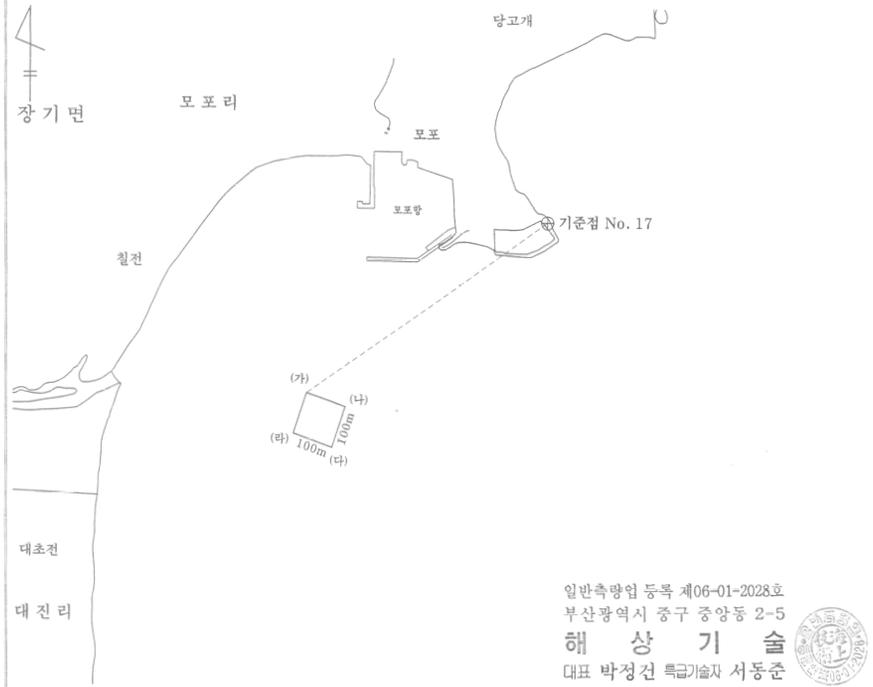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경북 포항 양식어업 면허 제 호 축척 1/10,000

1. 어업의 종류 : 복합양식 어업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연승식
 3. 수면의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4. 수면의 구역 :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어장의 면적 : 10,000 m² (1.0 ha)
- 기점(보조기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면 모포리 기준점 No. 17

구획점	직 각 좌 표(GRS80)		경 위 도(WGS84)		점간거리(m)	
	X (N)	Y (E)	위 도 (N)	경 도 (E)	구간	거리
㉑	370,252.5	247,310.1	35° - 55' - 43.07"	129° - 31' - 27.26"	㉑-㉒	100.0
㉒	370,220.6	247,404.9	35° - 55' - 42.02"	129° - 31' - 31.03"	㉒-㉓	100.0
㉓	370,125.9	247,372.9	35° - 55' - 38.95"	129° - 31' - 29.74"	㉓-㉔	100.0
㉔	370,157.8	247,278.1	35° - 55' - 40.00"	129° - 31' - 25.97"	㉔-㉑	100.0



일반측량업 등록 제06-01-20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5
해 상 기 술
 대표 박정건 특급기술사 서동준

